

준법감시인 심의필 심의 번호: 2013-035(심의일: 2013.02.13)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고객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특약,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가입 기업 및 근로지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

2 거래 조건

그 브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u>실제 계약</u> <u>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u>

구 문	내 용							
가 입 자 격	퇴직연금사업자(자산관리기관)							
가 입 금 액	1원 이상							
가입기간·이율 (2015.01.01현재)	(단위 : %, 연, 세전)							
	이 율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DB형	2.29	2.32	2.49	2.60	2.73	2.92	
	DC형/IRP형	2.29	2.32	2.49	2.60	2.73	2.92	
	※ 직전 3개월간의 적용이율은 당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우대금리	해당사항없음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3개월 미만			0.10%				
	3개월 이상 1년 미만		고	고시이율 ^{주1)} X 경과월수 ^{주2)} /계약월수 ^{주3)} * 40%				
		2년 미만		고시이율 X 경과월수/계약월수 * 50%				
		3년 미만		고시이율 X 경과월수/계약월수 * 60%				
중도해지 금리		이상 기기기이		고시이율 X 경과월수/계약월수 * 70%				
	주1) 고시이율: 신규 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이율이며 우대이율 제외주2) 경과월수: 예입일로부터 해지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상주3) 계약월수: 예입일로부터 만기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절상단, 계약기간이 월단위인 경우 계약월수를 그대로 사용하며, 경과월수는 계약월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저적용이율 ▶ 3개월 이상 1년 미만 : 0.50% ▶ 1년 이상 : 1.50%							
만기 후 금리	해당사항없음(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만기 시 자동갱신)							
이자 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특별중도해지 사유	* 특별중도해지사유 1. 퇴직, 연금지급 등 급여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3.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5.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6. 수탁자의 사임					
	7. 당행을 수탁자로 하는 퇴직연금의 계약이전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계약에 의한 일정률의 수수료의 징수 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에 의한 운용 관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나.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에 의한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 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재예치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계약기간이 3월, 6월, 1년인 계약: 계약기간별 약정이율 2. 계약기간이 2년, 3년, 5년인 경우					
	(1) 예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1년제 계약기간 이율 (2) 예치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2년제 계약기간 이율					
	(3) 예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3년제 계약기간 이율					
계약의 해지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					
예금자보호여부	확정급여(DB)형	해당사항없음				
	확정기여(DC)형 개인퇴직계좌(IRP)형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				
		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				
		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				
		호하지 않습니다.				

3 유의 사항

- 분할지급
 - ▶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까지 분할해지 기능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별 만기해지 포함 3회까지 분할해지 가능
 - ▶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분할해지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함
- 질권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잔액증명발급,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재예치
 - ▶ 이 예금은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기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 신규시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 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이 예금은 거래처가 재예치 의사 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하지 않으며, 거래처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
 - ▶ 재예치 후 만기전 해지시에는 재예치 후 만기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재예치일(최종 만기연장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편(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338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jbank.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